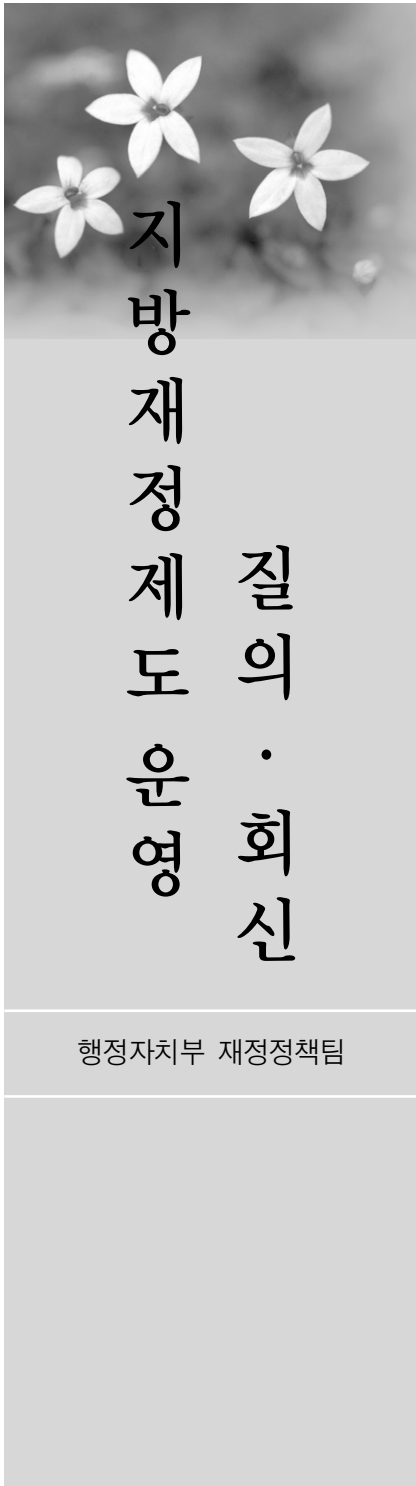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1. 대형공사의 용어정의 관련 질의

[질 의]

- 학술연구용역의 범위 및 종류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연구용역으로서 정부(자치단체)정책이나 시책 등의 제도개선방안 마련 또는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2. 국가유공자설립단체 수익계약 관련 질의

〈질의〉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경비·청소·조경·시설관리·오폐수처리·전산업무개발 등 용역 수익사업승인을 받고 엔지니



어령활동주체 등록을 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 마목, 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2006.2.7) VI.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함에 있어서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상기 법률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수의계약시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만 계약이 가능한지?
 4. 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2006.2.7) VI.에 의하여 3천만원이하 용역·물품구매제조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 질의 1~3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 2006.2.7.) IV-2-나-②-④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직접 제출받아 가격·품질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의계약의 상한 금액기준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질의4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바, 동 요령 VI-5의 규정은 추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용역, 물품제조·구매로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

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로 견적제출대상자를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가격·품질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 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관련 질의

〈질의〉

-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평가하는 시설물유지 관리공사에 있어 2005년 5월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2005년 12월 및 2006년 2월에 준공한 실적이 있어 실적증명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 3년간 업종별 실적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시설공사의 적격심사시 시공경험을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업체가 관련협회에 1회계연도 단위로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평가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 경우에도 시공실적에 대한 업종실적 인정기간 및 누계실적의 금액단위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와 동일하여야 함으로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인정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폐기물처리용역 지역제한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의 범위 및 지역을 시·군으로 제한한 경우 해당 시·군에 소재한 업체가 전무한 경우의 수의견적 제출방식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을 지역제한(시·군)으로 발주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중간처리업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해당 시·군에 소재한 수집운반업체를 대표로 하여 타 시·군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체와 공동으로 수의견적을 제출토록 수의견적 안내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 용역계약의 지역제한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접근성·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의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당해 시·군과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여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하거나 관할 시·도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자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용역을 지역제한(시·군)으로 발주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중간처리업체가 전무한 경우는 해당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지역범위를 확대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 수의계약 관련 질의

〈질 의〉

- 한국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당해 법률에서 정한 용역사업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전기사업법이 특별법인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법률이 특별법이고 해당 기관이 특별법에 의거 설립되어 법률로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전기사업법이 특별법인지 여부는 법제처 또는 당해 법률의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소액수의계약의 지하수공사 적용 구분관련 질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구분에 있어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 공업을 어디에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IV-1-(1)소액수의계약의 구분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시 공업은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에 해당됩니다.

7.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련 질의

〈질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6호마목에 의거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해 집행할 경우 2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① 이 경우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아닌 업체의 견적을 받아도 가능한지, ② 농공단지 입



주업체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경우 거리와 상관없는지, ③수의계약 상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6호마목에 의거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 경우 견적제출 업체는 거리와 관계없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의 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8.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관련 질의

〈질 의〉

-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집행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6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합니다.

－ 위의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Ⅶ.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직접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
고 견적서를 2인이상으로부터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9. 비영리법인 수의계약 관련 질의

〈질의〉

- 사단법인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장애인을 위한 단체
(문화관광부장관 허가)로 해당 법인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서 수의계약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8호바목의 규정
에 의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민법」 제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
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
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10. 입찰공고의 우선순위 관련 질의

〈질의〉

- 입찰공고시 관급액을 도급자설치 관급액과 관급자설치 관급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고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입력시에는 관급액 전체를 관급자설치 관급액으로 입력한 경우 건설공사 도급하한 결정시 입찰공고문과 나라 장터 입력내용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와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적용시 관급액의 적용 범위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도급하한의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련업무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관련 질의

〈질의〉

- 행자부 재정정책팀-3394(2004.8.7)호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주지사항 통보” 사항과 관련하여
 - ① 당 공사는 '04.7.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기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는 용역 중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기준일 및 시점
 - ②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 하여 당초 계약기간을 단축 변경 및 계약금액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회신〉

○ 행자부 재정정책팀-3394(2004. 8. 7)호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주지 사항 통보” 내용에 의거 04.7.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기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는 용역 중 주 40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 ①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시점 및 기준일은 입찰일(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의 공포일인 2003년 9월 15일 이전에 계약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 ②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초 계약기간의 단축 및 계약금액의 감액 변경할 수 없을 것이며,
- ③ 준공일(납품일 등) 변경불가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정근무시간외의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한 경우에는 동 조건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12. 채무부담행위 계약 관련 질의

〈질의〉

○ 00시에서 유통단지내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채무부담액은 130억으로 2006년 말까지 상환하며”라고 명시한 경우 2006년 3월 현재 당해 건설공사의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지급 대금이 확보되었다면 2006년말 이전이라도 준공검사후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세출예산이나 명시이월비, 계속비의 범위이외에 차년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



채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금전납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채무부담액 상황에 대한 입찰공고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3. 물품구매입찰 계약금액 결정 관련 질의

〈질 의〉

- 물품구매 총액단가입찰의 계약금액 결정에 있어 입찰공고문에 “우리시에서 산출한 예정단가에 낙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 계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경우에 공고문에 의거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낙찰율에 의거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한 각 품목별 단가산출서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단가산출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거 단가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의 취지 및 단가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4. 학술연구용역 의미 및 발주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에 일정금액 이하의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의 범위 및 학술연구용역을 일반용역과 분리발주 가능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 예규) VI.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용역중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연구용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용역은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과 이외의 일반용역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물관리·어장정화·학술연구용역 등 그 종류가 다양한 바, 학술연구용역이 일반용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포괄적인 일반용역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15. 음식물 구매 수의계약 관련 질의

〈질 의〉

- 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Ⅵ-5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 3천만 원이하의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지역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 Ⅵ-5-㉠ 음식물(재료구입 포함)의 구입, 농수산물의 구매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우리 회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추정가격 3천만 원이하인 물품·용역은 변질·손상이 우려되는 음식물(재료 포함)·농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04호, 2006.2.7) Ⅵ-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제출 대상자를 지역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격·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 입니다.

16. 한글과 아라비아 병기가 상이한 입찰시 처리방법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입찰참여자가 제출

한 입찰서의 금액이 한글과 아라비아를 병행하여 병기하면서 서로 상이(한글: 금 칠천 오백육십 원정, 아라비아: ₩76,500,000원, 산출내역서: ₩76,500,000원)한 경우 처리방법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입찰유 의서(행자부 예규) 제8조제5항에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를 원칙으로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으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6호)에 의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내용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담당자가 객관적인 정황, 가격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관련 질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자부 예규)에 의한 계약 집행시 자치단체별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하는 범위

〈회신〉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 예규 제186호)Ⅳ-2.에 [별표] 분야별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분야별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란 기술능력평가의 객관적 지표, 주관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각각의 배점한도의 가감조정금액이 10%를 초과하



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18. 시설공사 접근성평가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항목중 접근성 평가에 있어 당해공사 현장을 관찰하는 시·군지역 또는 인접한 시·군지역에 주된 사업소가 소재한 업체에 일정점수(0.2점)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접한 시·군지역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제183호) 〈별지9 접근성 평가〉에 있어 인접한 시·군지역이란 금번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해당 시·군에 행정구역상 경계가 인접(隣接)한 지역의 시·군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19. 장기계속계약 관련 질의

〈질 의〉

- ○○광역시 ○○대교 시설물유지관리용역에 있어 1년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업체를 선정할 경우 당해 사업의 연결성 및 기술 축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3~5년 단위의 계약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각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

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당해 사업의 성질, 연속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0. 수의계약 지역제한범위 관련 질의

〈질 의〉

- 산림법에는 산림사업을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액이 아닌 산림사업을 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해당 자격을 갖춘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견적에 의할 수 있는지와 수의견적이 가능한 지역제한의 범위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8호아목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행 사업자와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 귀 질의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등을 갖춘 모든 자를 대상으로 견적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견적제출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1. 수의계약 계약상대 결정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90호) 6-1-2 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제5호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 용역의뢰시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소액수의계약시 법인의 지점을 견적서 제출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의 상충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90호) 6-1-2 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제5호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협회에 확인 및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1-(2) 소액 수의계약 요령 제2항에 의거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당해 시·군과 인접한 시·군(일부 시·군만 선택이 가능)을 포함하여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하거나 관할 시·도 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자(법인의 경우 지점을 포함한다)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당해지역 내에 지점인사업자가 위치한 경우 본점이 견적을 제출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22.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 바, 이 경우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업체가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기준년도

〈회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4호)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업종평균율의 적용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중 중분류업종(종합)의 자료를 적용하며 이를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하고 있고, 동 예규 제7조 규정에 의거 재무제표는 최근 1회계년도의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는 한국은행에서 조사·공표한 시점의 년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의 재무제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회계연도의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3.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

- 공사에 있어 여건 변화에 따른 공종(보강토 옹벽 ⇒ 교량)의 변경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국가계약법 적용시점 : '06년 이전)에 있어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3, 2005. 9. 8) 예규 제19조에 의거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 질의하신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설계도서, 현장상황 등 구체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4. 하자불분명 수의계약 관련 질의

〈질 의〉

- 금차공사와 전차공사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경우 하자책임의 구분이 곤란한 사유로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04호) IV-3. 하자구분 곤란·혼잡·마감·특허 공법 등 공사 규정에 의거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로서 전차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의거 일정점수(추정가격 50억 이상 95점, 50억 미만 90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 질의하신 사항은 계약담당자가 설계도서, 현장상황, 평가점수 등 구체적 사항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5. 기술용역 적격심사 관련 질의

〈질의〉

- 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사전심사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의 자격자를 당해 시·도지역에 소지한 사업자로 본다’에서
 - 사전심사에 필요한 공고상 면허가 각각 개별법에 의한 여러가지 면허일 때 일부 면허의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지역의 적용 범위 및 지역참여도 평가방법
 - ‘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와 접한 시도를 말함’의 범위는?
- ②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유 기준일은?

〈회신〉

☐ 질의 ①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참여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당해 시·도 지역내에 사전심사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와 접한 시도를 말함)의 해당 자격 소지자를 당해 시·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일부 면허의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면허별로 인접 시·도 지역의 해당 자격 소지자를 당해 시·도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로 보아 해당면허 자격부분 소지자들의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와 접한 시·도라 함은 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에 경계선이 접한 지역의 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질의 ②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입찰참가자격의 면허보유 기준은 입찰서 제출마감일(투찰한 경우 투찰일) 전일임을 알려드립니다.

26. 일괄입찰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 의〉

- 일괄입찰에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괄입찰 계약에 있어 舊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